

중장기 국제거래에서 분쟁해결위원회에 관한 고찰

- 건설계약을 중심으로 -

유 병 옥*

-
- I. 서 론
 - II. 중장기 국제거래분쟁에서 중재의 한계
 - III. 분쟁해결위원회의 특성과 적용
 - IV. 분쟁해결위원회의 한계와 대응방안
 - V. 결 론
-

주제어 : 중장기 국제거래, 분쟁위원회, 분쟁심의회위원회, 분쟁심판위원회,
복합분쟁해결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비구속적 권고, 구속적 결정

I. 서 론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해외건설 수주 및 해외자원개발부터 플랜트수출까지 꾸준히 그 규모와 성과를 높여가고 있다. 기존의 물품무역을 중심으로 이루어

*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지던 무역의 범주는 그 영역이 물품외 거래로 확대되고 있으며, 플랜트거래는 물품과 함께 기술, 사람, 인력과 자본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며 복잡한 계약으로 이루어진다.¹⁾ 특히, 중장기 무역거래는 거래의 기간이 오래 지속되며 계약이 이행과정에서 기대와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확인이 이루어지는 거래이다. 대표적인 것이 건설이나 플랜트거래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거래는 오랜 거래기간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 기간 중에 자연적 혹은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계약당시에는 예견하지 못한 상황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기에 계약 당사자 간 충돌이나 분쟁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예견 불가능한 다양한 상황을 계약의 내용을 통해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장기 국제거래는 그 특성상 분쟁해결이 지연될 경우 지속적이며 복잡한 계약의 이행과정으로 인하여 상품거래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상당한 비용의 부담이 야기되기 때문에 신속한 분쟁해결이 필수적이다. 분쟁해결의 지연은 계약상 비용유발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는 난제이다.

이에 따라 중장기 무역거래에서 계약의 성립시점에 분쟁해결위원회²⁾를 구성하여 거래의 이행과정 중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분쟁의 발생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의 발생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거래당사자들의 상거래상의 명성과 신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고액거래 당사자들의 상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에 분쟁해결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 접근은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된다.

분쟁발생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여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경제적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사거래의 신뢰와 안정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무역거래의 분쟁해결위원회 제도에 대한 고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장기 국제거래의 분쟁해결위원회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매우 드물다. 예를

1) 예를 들어 건설계약의 경우 계약이후 공사변동에 관한 사정이나 물가변동에 관한 협의 규정 등 일반적 물품거래와는 다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2) 'Dispute Board'는 '분쟁위원회'로 번역되지만 그 특성과 의미를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분쟁해결위원회'로 지칭하기로 한다.

들어 최명국의 “FIDIC 표준계약조건상의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³⁾은 건설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중심으로 분쟁해결규정을 고찰하고 있으며, 이동욱 외 2인의 “FIDIC 계약조건과 국내계약조건의 클레임 관련 조항 비교연구”⁴⁾는 공사계약의 FIDIC의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국가계약법과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비교 고찰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분쟁해결위원회(dispute boards) 제도에 의한 분쟁해결의 특징과 한계를 고찰하는데 미흡하다. 그러나 해외의 분쟁해결위원회의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이나 영국 등 유수의 플랜트나 건설 산업선도국은 국제적인 표준약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위원회 매뉴얼 Version 1.0 을 2012년 3월에 공개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복합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해결의 효율적인 방법으로 분쟁해결위원회의 이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⁵⁾

이에 본고에서는 분쟁해결위원회(dispute boards)의 특징과 이점을 중심으로 그 기능을 고찰하고 한계점과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중장기국제거래에서 분쟁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무적 대응력을 증진하고자 한다.

II. 중장기 국제거래분쟁에서 중재의 한계

중장기 국제거래의 대표적인 것이 해외 플랜트나 건설 프로젝트다. 건설 프로젝트에서 다반사로 발생하는 분쟁은 먼저 계약당사자 사이에 우호적인 협의를 통하며, 사법적 해결방법으로는 주로 중재를 통하여 해결되고 있다.⁶⁾ 국제상사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은 소송의 대안적 분쟁해결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⁷⁾

3) 최명국, “FIDIC 표준계약조건상의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2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5. 8.

4) 이동욱, 김창학, 이배호, “FIDIC 계약조건과 국내계약조건의 클레임 관련조항 비교 연구”, 기술과학연구소 논문집, 제28권, 중앙대학교 기술과학연구소, 1998.

5) <http://hsf-adrnotes.com/2012/07/20/> (2013년 1월 20일 방문 인용)

6) 최명국, 전제논문, p. 3.

그러나 건설 프로젝트에서 야기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중재가 대안적 분쟁해결로서 소송보다 유연한 분쟁해결절차를 가지고 있지만, 해외건설 프로젝트와 같은 중장기국제거래에서 야기되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충분한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⁸⁾ 중재가 플랜트나 건설프로젝트와 같은 중장기국제거래의 특성상 분쟁해결방법으로써 부적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속적인 거래이행과정에서 새로운 영역과 복잡한 분쟁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중장기 국제거래의 분쟁특성을 일반 중재인들이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분쟁해결로서 중재는 규모가 큰 플랜트나 건설 프로젝트에서 야기되는 분쟁은 일반 중재인들에게는 너무 복잡한 사안이 되고 있다. 전통적인 중재인의 자질로는 중재판정부가 법률 전문가들이 주류가 되고 있는 중재제도의 환경과 달리 건설프로젝트에는 전문적인 자질이 요구되기 때문에 분쟁해결을 위한 자질에 있어서 일반 중재인과는 구별된다.

법률 전문가는 적절한 중재인의 자격으로 신뢰할 수 있는 중재인으로서 부족하다는 의미보다는 플랜트나 건설 프로젝트 관련 분쟁을 개관하고 기술적인 문제나 상이한 현장 실무적인 이해관계를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사업 환경에도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분쟁해결의 지연은 중장기 국제거래에 커다란 비용을 초래한다. 중장기 국제거래는 계약의 이행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현장 실무에 익숙하고 전문적 지식 및 경험자로서 신속한 분쟁해결을 구해야 한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한 이후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을 후속적으로 밝게 되는 중재제도의 경우는 중재인들이 플랜트나 건설 프로젝트 관련 분쟁사안을 엄밀하고 상세히 파악하고 분쟁사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대체로 중재절차는 중장기국제거래의 특성상 요망하는 기대만큼 신속하게 분쟁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플랜트나 건설 프로젝트는

7) 건설중재와 관련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2005년~2010년까지 6년간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2005년 54건 600억 규모의 건설사건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91건 2,800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고액사건의 중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대한상사중재원, 건설중재-판례사례집, 2011. 8, pp.31-38.

8) Susanne Kratzsch, "ICC Dispute Resolution Rules: ICC Dispute Boards and ICC Pre-Arbitral Referees", Construction Law Journal, No. 2, 2010, p. 88.

엄격한 일정의 계획표(time schedule)에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 시간을 갖지 못하며, 불완전한 이견이나 분쟁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늦어지거나 주저하는 경우 공정에 있어서 커다란 비용손해를 발생시킨다.⁹⁾

셋째, 중재가 지향하는 손해배상금을 통한 분쟁해결은 중장기 국제거래에는 적절하지 않다. 중재나 소송의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 금전적 손해배상의 판정이나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그러나 중장기국제거래로서 플랜트나 건설 프로젝트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손해배상금이 아닌 프로젝트의 완성을 지향하며 분쟁이 해결되어야 한다. 불완전한 작업은 단순한 손해배상액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의 현금흐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즉, 본 계약자의 손해액뿐만 아니라 하청계약자들을 위한 지급액을 포함하여 자금조달을 위한 기업의 은행 이자율에도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신용도와 명성에도 영향이 파급된다. 단순한 분쟁으로 인한 작업지연에 따른 손해는 중재를 통하여 계약조건에 따른 중재판정 손해배상금이나 법정이자율보다 크다.

그러므로 소송이나 중재에 의한 지연이나 손해배상금 등으로 자금조달과 지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이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계약이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은 규모의 분쟁에 대해서도 중재가 이용된다면 이 경우 또한 비용과 시간적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재나 소송이외에 분쟁해결의 방법으로써 중장기 국제거래의 특성에 부합하는 분쟁해결방법이 고려된다.

분쟁해결위원회(dispute boards) 제도는 중장기국제거래의 특성상 분쟁을 즉각적이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전문적이며 실무적인 해결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분쟁해결위원회 제도는 구속적인 분쟁해결의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계약적 구속력을 갖는다. 중장기 국제거래 시장에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구상되어 분쟁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분쟁의 해결을 구하는 방법이다.

9) 중재절차의 지연은 건설 프로젝트 분쟁해결에서 중재제도가 불평과 불만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는 상반되는 경우로서 소액분쟁일 경우에도 중재제도는 상대적으로 고비용의 분쟁해결방법으로 인식되어 주저하게 된다.

Ⅲ. 분쟁해결위원회의 특성과 적용

1. 분쟁해결위원회 개념과 유형

1) 분쟁해결위원회 제도의 등장과 확산

분쟁해결위원회는 7, 8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터널이나 댐과 같은 큰 규모의 플랜트나 건설 프로젝트의 계약 조건을 통해 클레임해결방법으로 첨부되었다. 또한 국제건설엔지니어링연합회(Federal Internationale des Ingenieurs Conseils; FIDIC)는 건설공사용 표준계약조건들을 간행해 왔으며, FIDIC 표준계약조건들이 국제 건설 프로젝트에 이용되었다. 이 표준계약조건은 초기에 분쟁해결은 엔지니어(감리자)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였으나, 주지하다시피 엔지니어(감리자)는 플랜트나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주자에 의해 지정되고 보수를 받기 때문에 공정한 분쟁해결의 당사자로서의 역할과는 반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감리자가 아닌 분쟁해결위원회(dispute boards)에 의한 분쟁해결을 구상하게 되었다. FIDIC의 1999년 신표준계약약관¹⁰⁾을 간행하였으며, 본 표준약관에서 분쟁해결위원회에 의한 분쟁해결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FIDIC는 영국에서는 ICE(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을 통해 표준계약조건으로 확산되었으며, 준사법적 분쟁해결로서 분쟁해결위원회에 의한 당사자들의 분쟁해결을 지원하였다. 국제적으로 분쟁해결위원회가 널리 알려진 것은 건설 프로젝트를 규율하는 FIDIC의 건설관련 표준계약서인 Red, Silver, Yellow Book이 널리 인용되었기 때문이다. Red, Silver, Yellow Books의 분쟁해결약정에는 모두 첫 단계로 분쟁해결위원회 중에서도 분쟁심판위원회(Dispute Adjudication Boards; DAB)에 의한 분쟁해결을 규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최종 단계로서 ICC 중재규칙을 규정하고 있다.¹¹⁾

10) 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first ed 1999(Red book), Conditions of Contract for Plant & Design Build first ed 1999(Yellow book),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first ed 1999(Silver book) 등이 있다.

11) FIDIC 표준계약약관은 ICC의 Dispute Board Rules을 참조로 포함하고 있으며 분쟁해결위원회 분쟁해결서비스에 관한 이용확산에 세계은행을 잇는 주도적인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분쟁해결위원회의 국제적 확산은 세계은행(world bank)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즉, 세계은행의 금융조달 프로젝트에 관한 입찰 서류에 분쟁해결위원회를 약정함으로써 분쟁해결위원회를 관행적 이용하도록 표준 약정함으로써 분쟁해결위원회 모델을 국제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큰 규모의 국제프로젝트에서 성공적으로 분쟁해결위원회를 이용하게 되었다.¹²⁾

2) 분쟁해결위원회의 개념과 유형

분쟁해결위원회(dispute boards)는 중장기 거래에서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인 충돌이나 분쟁을 예방하고, 발생하는 충돌이나 분쟁을 즉시적으로 대응하여 권고나 심판을 제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나 중재 및 조정과 구별되는 계약적 분쟁해결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분쟁해결위원회는 중장기 거래에서 소송이나 중재에 의하지 않고 분쟁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거나 분쟁을 해결하도록 당사자들을 도와주는데 의의가 있다. 분쟁해결위원회는 플랜트나 건설 프로젝트와 같은 중장기거래에 적용될 수 있다. 분쟁해결위원회는 법률 전문가이기보다는 기술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1인 혹은 3인을 위원으로 하여 플랜트나 건설 프로젝트에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야기될 수 있는 충돌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즉시적으로 대응하여 신속하게 권고(recommendation) 또는 심판(adjudication)을 제공한다.

분쟁해결위원회의 활동은 플랜트나 건설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정규적으로 행하는 회의를 지속하며, 분쟁이 야기하는 경우에 임의 모임을 갖는다.

분쟁해결위원회의 결정은 당사자들의 약정에 따라 비구속적인 권고(recommendation)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임시적이며 구속적인 결정(adjudication, decision)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¹³⁾

12) 2007년 기준 세계 1,350개 이상, 거래금액으로는 1,400억 USD에 이르는 프로젝트에서 분쟁해결위원회(dispute boards)의 이용을 포함하고 있다.

Peter H.J. Chapman, "Dispute Boards on Major Infrastructure Projects", www.daps.org.au, www.PeterHJChapman.com, 2011, p. 5.

분쟁해결위원회는 주요 3가지 유형과 기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분쟁심의위원회(dispute review board; DRB)이다. 분쟁심의위원회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분쟁 관련 사안을 심의하며, 분쟁심의위원회는 당사자들에게 비구속적인 권고(non-binding recommendation)를 제공한다.

DRB는 1970년대 미국에서 처음으로 채택한 분쟁해결제도이다. 거대한 터널 건설프로젝트에 관한 분쟁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적용하였다. 국제상업회의소의 분쟁해결위원회 규칙(Dispute Board Rules 2004)에서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¹⁴⁾ 현재는 ICC의 분쟁심의위원회 규칙과 미국중재협회(AAA)의 DRB 지침 등이 있다. FIDIC 표준 계약서 일부에서도 분쟁해결을 위한 DRB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¹⁵⁾ 세계은행에서 행해지는 조달작업의 표준 입찰 문서에서도 DRB 약정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분쟁심판위원회(dispute adjudication board; DAB)이다. DAB는 분쟁 문제에 관한 구속적 임의결정을 제시한다. ICC는 분쟁해결위원회규칙에서 DAB를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⁶⁾ FIDIC표준계약에서도 DAB를 선택할 수 있도록 포함하고 있다.

DAB는 특히 영국의 건설 프로젝트에서 도입되어 발전되었다. 오랜 기간동안 이루어지는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DAB를 이용하였다. 영국의 DAB는 당사자들에게 구속적인 결정(binding decision)을 신속하게 제시하게 된다. 구속적인 결정은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에게 수용되지만, 만약 이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있을지라도 후속적인 중재나 소송을 통한 최종적 판정이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이를 달리 표현하면 임시적인 구속적 결정

13) 분쟁해결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의 계약적 합의에 의한다. 비구속적 권고의 경우 당사자들의 이의가 없는 경우 구속성을 갖게 되며, 이의를 갖는 당사자 일방 혹은 양당사자가 중재나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까지는 구속적 임의결정력을 갖는다. 한편 분쟁해결위원회의 구속적 임의결정이나 비구속적 권고는 중재나 소송에서 증거(evidence)로서 활용될 수 있다.

14) ICC's Dispute Board Rules, Article 3.

15) FIDIC의 표준계약유형 중에 yellow book과 silver book의 경우에는 DRB에 의한 분쟁해결위원회를 선택할 수 있다.

16) ICC의 DB Rules 2004의 제3조는 당사자들이 특히 분쟁해결위원회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nterim and binding decision)이라고 칭할 수 있다.

셋째, 복합분쟁해결위원회(combined dispute board, CDB)이다. CDB는 ICC에서 새롭게 소개하고 있는 분쟁해결위원회 유형으로서 DRB와 DAB의 혼합형이다. CDB 약정은 계약의 협상을 통하여 구성된다. 만약 당사자들이 분쟁해결위원회의 결정이나 권고에 의문을 가지고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안이 될 수 있다. CDB는 단순히 권고를 제시하지만, 분쟁이 제기될 때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속적 결정을 합의할 수 있다. 긴급성 정도나 건설 작업의 지연을 피하는 상황 또는 비구속적인 권고로서는 증거의 보존이 어려울 경우에는 권고보다는 결정이 적당하다.

결국, 분쟁해결위원회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 데 가장 큰 차이점은 구속적인 결정을 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DRB는 비구속적 권고를 제공할 수 있을 뿐인데 반하여 DAB는 구속적 결정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결정적이다.

이와 함께 기타 분쟁해결위원회 유형은 전적으로 당사자합의에 따른 비공식적 분쟁해결로 당사자들의 계약을 통하여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3가지 유형의 다양한 변형이다. 예를 들어 위원의 자질에 대한 특정을 당사자들이 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위원회의 심의기간을 규정하거나 증거로서의 유형과 범위에 관한 원칙을 설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더불어 분쟁해결위원회의 결정의 형식과 효력에 대한 규정을 포함될 수 있다.

2. 분쟁해결위원회에 의한 분쟁해결의 특성

분쟁해결위원회는 많은 면에서 중재나 소송과 구별된다. 특히 조정과 유사성을 가지는 부분이 있지만 이는 분쟁해결위원회의 인적 구성이나 시간적 및 절차적 특성을 고려할 때 차이가 크다.

분쟁해결위원회는 플랜트나 건설 프로젝트와 같은 중장기 국제거래가 가지는 특성 상 분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될 것이 요구되기에 그 과정에서 전문적이며 실무적인 이해를 기초로 하는 해결을 구하게 된다. 분쟁해결 과정에서도 계약이행의 중단이나 지연 방지 및 계약의 결과적 완성에 대한 기대와 그 충족을 지향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을 요한다.

분쟁해결위원회 제도는 전통적인 조정 및 중재나 소송 등 전통적인 분쟁해

결방법과 비교하면 중요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 요소로서 분쟁해결위원회 위원의 공정성, 전문성, 경험 등 자질에 관한 사항이다. 분쟁해결위원회 위원들은 당사자들의 합의로 지정되는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구성되고 전문성과 자질에 있어서 탁월하다. 일반적으로 1인 혹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함으로써 위원들의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해서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¹⁷⁾ 분쟁해결위원회 위원들은 프로젝트가 개시되면서 활동하기 때문에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노력하며 프로젝트에 집중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다.

분쟁해결위원회의 위원의 수와 지정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다. 대부분 분쟁해결위원회는 3인의 위원들로 구성되고 있다. 이 경우 일방당사자는 타방당사자와 협의 하에 1인의 위원을 지정하는데 이때 타방당사자의 승낙을 전제로 한다. 타방 당사자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1인의 위원을 선정하게 된다. 제3의 위원은 선정된 2명의 위원이 지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당사자들의 수락을 전제로 지정된다. 따라서 분쟁해결위원회의 지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연대하여(jointly) 합의로써 모든 위원이 지정된다고 할 수 있다.¹⁸⁾

둘째, 분쟁해결위원회의 시기적 대응에 관한 부분에서 뚜렷이 구별된다. 분쟁이 발생한 이후 분쟁해결을 구하는 다른 분쟁해결방법과는 달리 분쟁해결위원회의는 프로젝트가 개시될 때 위원을 지정하여 구성한다. 이에 따라 분쟁해결위원회 위원은 프로젝트에 대한 지식과 이해력을 축적하면서 프로젝트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프로젝트 기간의 개시부터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이며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익숙한 실제적 환경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잠재적으로 충돌이나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분쟁을 회피할 수 있도록 논의의 기회를 갖는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분쟁으로 심각하게 발전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도모하는 기회를 통하여 잠재적 문제들을 제거할 수 있다.¹⁹⁾

17) 1인 혹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도 계약당사자들에 의해 선정된다. 즉, 계약당사자들이 서로 연대하여 1인 혹은 3인의 위원들을 선정한다. 이는 중재에서 중재판정부가 3인으로 구성되는 경우 당사자 각각이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는 방식과는 구별된다.

18)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판정부의 구성은 당사자들이 연대하여(jointly)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며, 선정된 2인의 중재인이 제3의 중재인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분쟁해결위원회의 위원선정과 구별된다.

셋째, 분쟁해결위원회를 통한 협력적 관계의 증진이다. 위원의 자질과 능력으로서나 신뢰와 확신의 면에서나 계약당사자들간 및 위원사이에 프로젝트가 개시되면서부터 높게 축적되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전 과정동안 계약당사자들이 협력적 관계를 증진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들은 분쟁에 대한 더 많은 주의와 관심으로 분쟁을 실질적으로 대비하게 함으로서 전략적이며 사소한 충돌이 야기되는 것을 감소시키며 실질적으로 중요한 논쟁에 대해서만 다룰 수 있도록 하여 분쟁사안을 걸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정규적이며 지속적으로 작업과정과 이해관계의 충돌 및 분쟁과 관련한 만남과 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호간의 신랄한 비판이나 불손한 행동이 자제되고 상사관계가 훼손되는 경우를 경감하며, 우호적인 관계유지에 계약당사자들간 상호노력을 하도록 촉진한다. 직접 대면에 의한 만남이사법적인 충돌보다는 긴밀한 관계성을 유지하면서도 사법적인 접근보다는 실무적이며 현장 중심적이며 기술적인 접근과 상관계성과 실무적 접근이 이루어진다.

넷째, 공식적으로 분쟁을 제시하는 중재나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이 아니라, 비공식적 분쟁해결 방법으로서 분쟁해결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공식적인 분쟁의 제기를 현저히 감소시키게 된다. 공식적으로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재나 소송을 통한 사법적 해결을 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절차적으로 시간적 및 경제적 노력을 수반하게 됨으로써 프로젝트의 관계자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된다. 반면에 분쟁해결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은 계속적인 계약이행과정에서 야기되는 충돌이나 분쟁문제의 해결을 구하도록 당사자들의 협력적 분쟁해결로서 비공식적인 분쟁해결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분쟁해결위원회는 분쟁문제를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전 대

19) 분쟁해결위원회는 상호간에 충돌이나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에 즉각적으로 분쟁의 초기에 주의 깊은 관심으로 설명의 기회를 가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며, 심각한 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여 신속 대응할 수 있다. 프로젝트 과정에서 어떠한 충돌이나 분쟁이 야기될지 예측하여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분쟁해결위원회를 이용함으로써 즉각적인 충돌이나 분쟁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심각한 분쟁으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야기될 수 있는 경우를 해소하는데 유용하며, 또한 잠재적으로 산재한 충돌이나 분쟁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도 분쟁해결위원회의 즉각적인 대응과정을 통하여 해소함으로써 당사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다. Nael G. Bunni, "Dispute Board with Particular Emphasis on FIDIC's DAB Procedure",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and Dispute Resolution Conference, ICC and FIDIC in Cairo, April 2005, pp.3-6.

책으로서 잠재적인 충돌이나 분쟁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예방적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분쟁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사안을 대응함으로써 심각한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경제적 시간적 비용의 낭비를 해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예방적 대응활동은 사후의 치료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가진다.

3. 국제적 주요 분쟁해결위원회 규정과 적용

1) 국제상업회의소의 분쟁해결위원회 규칙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는 법과 관습의 주요한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국제상사분쟁해결분야에서도 중재규칙을 비롯한 분쟁해결위원회 규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상사거래의 촉진과 성장을 위한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플랜트나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특히나 엄격한 계획서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고 조금만 주저하며 의사결정이 늦어질 경우에는 금전적인 손해로 귀결되는 이유가 된다.²⁰⁾

이에 따라 분쟁심의위원회 혹은 분쟁심판위원회의 이용이 활발한 플랜트나 건설 프로젝트 산업분야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분쟁해결위원회 규칙(일명 Dispute Boards Rules)을 제정하여 2004년 9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분쟁해결분야에서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국제상업회의소가 규범화한 분쟁해결위원회 규칙은 분쟁해결절차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이 요구되는 국제 플랜트나 건설 프로젝트 산업계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범위로 분쟁해결위원회 규칙이 널리 수용될 수 있다.²¹⁾

ICC 분쟁해결위원회 규칙은 분쟁해결에서 미국모델인 분쟁심의위원회(dispute review board; DRB)나 FIDIC 혹은 영국모델인 분쟁심판위원회(dispute adjudication board; DAB)와 구별된다. 우선, 분쟁해결위원회의 유형

20) Susanne Kratzsch, "ICC dispute resolution rules: ICC dispute boards and ICC pre arbitral referees", Construction Law Journal, 2010.

21) Volker Mahnken, "ICC dispute board rules and the differences towards the FIDIC DAB provision", SIEMENS, LS Legal Service, 24 Jan. 2008. pp.20-21.

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ICC 규칙에서는 당사자들이 분쟁심의회위원회(DRB), 분쟁심판위원회(DAB), 복합분쟁해결위원회(CDB)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²²⁾ ICC의 분쟁해결위원회 규칙은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분쟁심의회위원회와 분쟁심판위원회를 포괄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혼합한 형태인 복합분쟁해결위원회를 새로이 소개하고 있다.

또 다른 점은 ICC 분쟁해결위원회 센터의 구성과 역할이다. ICC DB규칙하의 ICC 센터는 우호적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당사자들을 독려한다. 예를 들어 분쟁위원회 위원을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ICC 센터는 지정권을 행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분쟁해결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²³⁾ 분쟁해결위원회의 결정(decision)²⁴⁾의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ICC 센터에 의해 결정이 심의되어지도록 한다.²⁵⁾

ICC DB 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ICC DB 규칙의 특징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다. 분쟁해결위원회가 단독 위원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연합하여(jointly)단독위원을 지정한다.²⁶⁾ 만약에 3인의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연합하여 2명을 지정하고, 지정된 2명이 다른 제3의 위원을 선정한다. 이때 선정된 위원이 의장위원이 된다.²⁷⁾ 더불어 DB 규칙은 분쟁해결위원회 위원들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²⁸⁾ 분쟁해결위원회 위원이 독립성에 현저히 의문이 되는 경우에는 기타 분쟁해결을 위한 어떠한 역할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분쟁해결위원회의 구성시기와 운영기간은 프로젝트 계약이 시작되는 시점부

22) ICC Dispute Board Rules, Article 3.

23) ICC Dispute Board Rules, Art. 7.3.

24) 분쟁해결위원회에 의한 결정(decision)은 DAB나 CDB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이며, 권고(recommendation)의 제시가 이루어지는 DRB는 ICC센터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 만약 당사자들이 ICC 센터의 결정안의 심사를 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센터에 대한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

25) ICC Dispute Board Rules, Art. 21. 심사가 의뢰되는 경우에는 관련 비용은 ICC 센터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ICC Dispute Board Rules, Appendix Article 3)

26) ICC Dispute Board Rules, Art. 7.3.

27) ICC Dispute Board Rules, Art. 7.5.

28) ICC Dispute Board Rules, Art. 8.

터 개시되고 프로젝트의 전 과정동안 정규적인 분쟁예방과 해결활동을 지속한다.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인 중재제도는 중재가 개시되기 전에 분쟁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분쟁해결위원회의 경우에는 분쟁이 없어도 개시되고 운영된다.

둘째, 분쟁해결위원회의 정규적 활동과 정보제공을 통한 계약내용과 작업환경의 충분한 지식과 이해다. 분쟁해결위원회 제도의 효율성의 근간은 계약기간 동안 분쟁이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프로젝트와 관련한 여하한의 사항을 항상 정규적으로 통지받는 것이다. ICC DB 규칙은 당사자들이 분쟁해결위원회에 지속적으로 통지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²⁹⁾ 당사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요구받는 경우에 분쟁해결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³⁰⁾ 이를 통하여 위원들은 공정성에 대한 실재적 및 이론적 지식과 이해를 꾸준히 유지하며 정보를 꾸준히 공유함으로써 잠재적 및 실재적 클레임이나 이견을 제거한다.

셋째, ICC DB 규칙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와 분쟁해결 기한은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에게 달려 있다.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ICC DB 규칙은 절차진행에 대한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³¹⁾ 절차개시는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와 분쟁해결위원회에 진술서를 송부하면서 개시되며, 개시시점은 분쟁해결위원회의 단독위원 혹은 의장위원이 사건 진술서를 접수한 일자이다.³²⁾ 사건의 진술서에는 분쟁사실을 명확히 기술하며, 구하는 결정내용과 증거, 사건내용을 포함한다. 타방당사자는 진술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송부해야 한다.³³⁾ 답변서를 송부받은 이후 15일 이내에 분쟁과 관련한 청문이 진행되어야 한다.³⁴⁾ ICC DB 규칙은 신속한 분쟁해결을 구하기 위하여 분쟁해결위원회의 분쟁해결 결정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DB 규칙은 분쟁

29) ICC Dispute Board Rules, Art. 11.1.

30) ICC Dispute Board Rules, Art. 11.4.

31) ICC Dispute Board Rules, Art. 16. 참조.

32) ICC Dispute Board Rules, Art. 17.2.

33) ICC Dispute Board Rules, Art. 18.3.

34) ICC Dispute Board Rules, Art. 19.2. 청문의 장소는 분쟁해결위원회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여하한의 장소가 될 수 있다. ICC Dispute Board Rules, Art. 19.9.

해결위원회 의장위원이나 단독 위원이 사건 진술서를 수령한 이후 정해진 90일 이내에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⁵⁾

넷째, 분쟁해결위원회의 결정 유형은 ICC 분쟁해결위원회의 유형에 따라 구별된다.³⁶⁾ DRB는 권고(recommendation)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DAB는 결정(decision)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CDB는 권고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지만 분쟁발생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형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분쟁해결위원회의 결정은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한다.³⁷⁾ 만약에 3인의 위원들이 전원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다수결로 정한다.³⁸⁾ 특히, 불일치한 의견을 가진 위원의 소수의견은 서면 보고로서 당사자들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전원합의의 결정원칙과 소수의견의 통지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분쟁당사자들이 분쟁해결위원회의 결정을 신뢰하고 수용하도록 실질적으로 촉진한다.

한편 당사자들이 결정에 대한 ICC센터의 심의를 합의한 경우 ICC는 결정을 수령한 이후 30일 이내에 심의를 종료해야 한다. 어떠한 결정도 ICC 센터의 승인없이 위원들의 서명이 이루어지거나 당사자에게 송부되지 못한다.³⁹⁾

권고는 비구속적인 효력을 가지며,⁴⁰⁾ 결정은 당사자들에게 구속적인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비구속적 권고와 구속적 결정에서 구별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에게 수용된다. 왜냐하면 분쟁해결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 및 당사자들의 상관계 및 계약의 완성에 대한 기대에 따라 당사자들이 분쟁해결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후속적인 분

35) ICC Dispute Board Rules, Art. 20.1. 다만, 사건의 복잡성이나 특수한 상황에 따라 결정 기한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연장할 수는 있다.

36) ICC Dispute Board Rules, Art. 3, Art. 4, Art. 5, and Art. 6.

37) ICC Dispute Board Rules, Art. 23.

38) 중재의 경우에 중재판정은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중재법 제30조, ICC 중재규칙 제25조 1항, 영국 중재법 제22조 1항, LCIA rules 제26조 3항, AAA 국제중재규칙 제26조 1항 등에서 다수결에 의한 중재판정을 규정하고 있다.

39) ICC Dispute Board Rules, Art. 20 and 21. DRB나 CDB의 권고의 형식은 심의의 대상이 아니다. 결정의 형식인 DAB와 당사자들이 결정의 형식을 합의한 CDB의 경우가 ICC 센터의 심의 대상이 된다.

40) 비구속적 권고(non binding recommendation)에 대하여 부정적일 필요는 없다. 비구속적 권고는 계약당사자들의 지속적인 협상을 촉진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비구속적인 권고를 행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자치에 의한 자발적인 분쟁해결 촉진이나 분쟁의 회피노력과 위험 및 클레임 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쟁해결방법인 소송이나 중재에서도 DB의 결정이 인정되기 때문이다.⁴¹⁾ 그러나 구속적 결정이 집행결과와 같은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이는 계약적인 권고나 결정의 구속적 의무이며, 법원이나 중재에서의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다섯째, 분쟁해결위원회의 구성과 위원들의 수수료 및 ICC 센터 행정지원 비용 등 분쟁해결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여하한 비용은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부담이다. 당사자들은 균등하게 분쟁해결위원회의 수수료와 비용을 부담한다.⁴²⁾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부터 분쟁해결위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하므로 당사자들에게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법원의 소송이나 중재의 비용과 비교하여 분쟁을 회피를 위한 비용의 지출은 의미있고 적절한 비용지출이다.⁴³⁾

2) 미국중재협회의(AAA)의 DRB 지침

미국중재협회의는 분쟁해결위원회(dispute resolution board; DRB)의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중립적인 위원회에 의한 비구속적 권고(recommendation)을 제시함으로써 분쟁해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AA의 분쟁해결위원회 운영절차 규정(Dispute Resolution Board Operating Procedures)과 분쟁해결위원회 청문과 절차규정(Dispute Resolution Board Hearing Rules and Procedures)은 2000년 12월 1일 발효되었다.

DRB는 당사자들의 계약에 따르며 DRB가 절차규정대로 혹은 계약에 따라 비공식적이며 유연한 방법에 따라 운영된다.⁴⁴⁾

DRB의 운영은 프로젝트가 개시되면서 분쟁해결위원회의가 구성된 이후 분쟁

41) ICC Dispute Board Rules, Art. 25.

42) ICC Dispute Board Rules, Art. 26.1.

43) 일반적으로 건설 프로젝트에서 총액의 5~10%가 법적비용으로 지출되는 가운데 분쟁해결위원회의 운영비용은 건설 총액의 0.05~0.25%사이로 평균 0.15~2.0%로 평가되고 있다. Benjamin JW Teo, "Proactive dispute Prevention: The value of dispute review boards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27 BCL 233, Thomson Reuters, 2011, p.242.; Paula Gerber, Brennan J Ong, "21 today! Dispute review boards in Australia: Past, present and future", 22 ADRJ 180, Thomson Reuters, 2011, p.189. extract from www.daps.org.au

44) AAA Dispute Resolution Board Operating Procedures, Art. 2.0.

해결위원회는 60일 이내에 발주자와 시공자의 협조 하에 계약에 따른 월별진행보고서를 제공받기 위한 절차를 구성하여야 한다.⁴⁵⁾ 이와 더불어 작업의 진행과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3개월에 최소 1회 이상의 현장방문이 이루어져야 한다.⁴⁶⁾ 현장을 방문할 때에는 비공식적 회의와 함께 계약에 따른 작업현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행한다. 특히 분쟁해결위원회 의장이 소집하는 비공식적인 회의는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며,⁴⁷⁾ 주요 안전으로는 작업의 완성도와 작업현황 및 향후 작업 그리고 잠재적 예상 문제나 대안을 논의할 뿐만 아니라 발생한 분쟁이나 이견들이 포함된다.⁴⁸⁾

DRB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청문의 장소는 작업장이며, 비공식적으로 효율적이며 신속한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⁴⁹⁾ DRB는 청문이 종료된 이후 14일 이내에 분쟁해결을 위한 권고문(recommendation)을 작성하기 위하여 회의가 이루어지고 작성된 권고문이 AAA에 의해 발주자와 시공자에게 송부된다.⁵⁰⁾ 법률적으로 조언적 권고(advisory recommendation)는 분쟁해결위원회의 의견으로서 당사자들에게 문제에 대하여 내리는 구속력 있는 결정은 아니다.

DRB의 분쟁해결과정은 엄격한 사법적 절차에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의 제시나 거증 책임은 사법적 규칙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DRB는 권고를 제시하기 위한 청구나 변론사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는 경우 문서의 제시나 구두진술만으로 제한할 수 있다.⁵¹⁾

특히 AAA의 DRB 규칙의 특징중의 하나는 분쟁의 병합이나 분할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DRB는 유사한 상황이나 법적 혹은 사실의 문제로부터 야기되는 여러 분쟁들을 병합하기로 결정하거나 또는 하나의 분쟁이 시비의

45) AAA Dispute Resolution Board Operating Procedures, Art. 4.0.

46) AAA Dispute Resolution Board Operating Procedures, Art. 5.0.

47) 위원회 위원과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일방적인 어느 일방 당사자를 배제한 대화나 권고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AAA Dispute Resolution Board Operating Procedures, Art. 2.0.

48) AAA Dispute Resolution Board Operating Procedures, Art. 7.0.

49) AAA Dispute Resolution Board Hearing Rules and Procedures, Art. 2.0 and Art. 5.0.

50) AAA Dispute Resolution Board Hearing Rules and Procedures, Art. 17.0.

51) AAA Dispute Resolution Board Hearing Rules and Procedures, Art. 9.0.

결정문제와 금액이나 가치의 결정문제로 분할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모든 관계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⁵²⁾ 이와 함께 하청업체가 연관되거나 포함되는 분쟁의 경우 계약자(시공자)가 각각의 하청업체의 대표권을 가지며 제시된 하청업체의 클레임 제기를 지원하기 위해 DRB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⁵³⁾

3) 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FIDIC)의 분쟁해결위원회

FIDIC의 분쟁해결위원회제도로서 DAB는 건설계약 표준으로 1992년 개정된 표준계약서(Red book)의 1996년 보충규정으로 처음 소개되었다. 그 이후 새롭게 개정된 FIDIC는 표준계약서 유형에 분쟁심판위원회(DAB)에 의한 분쟁해결을 표준약정으로 포함하였다. 즉, Red Book(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1999), Yellow Book(Condition of Contract for Plant & Design Build, 1999), Silver Book(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1999)에서 DAB를 포함하는 여러 유형의 표준계약조건의 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정한 표준계약조건을 1999년 발표하였다. 새로운 표준계약조건은 기존에 오랜 동안 이용되어 왔던 표준계약조건의 기본 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특히 분쟁해결부분에서 이전의 표준계약조건에 따른 감리자(engineer)에 의해 일차적으로 분쟁이 해결될 것을 규정하던 것과는 달리 새로운 표준계약조건은 분쟁해결위원회의 한 유형인 분쟁심판위원회(DAB)에 의한 분쟁해결을 구하도록 하여 객관성과 독립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왜냐하면 기존의 감리자에 의한 일차적 분쟁해결규정⁵⁴⁾은 감리자가 발주자(employer)의 지정과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발주자와 감리자를 동일 입장당사자들로 구성하여 별도의

52) AAA Dispute Resolution Board Hearing Rules and Procedures, Art. 13.0.

53) AAA Dispute Resolution Board Hearing Rules and Procedures, Art. 14.0.

54) 1999년 이전의 옛 FIDIC의 제1부의 일반거래조건의 제67.1조의 분쟁해결규정에서는 "... the matter in dispute shall, in the first place, be referred in writing to the Encgineer, with a copy to the other party. Such reference shall state that it is made pursuant to this Clause. No later than the eighty-fourth day after the day on which he received such reference the Engineer shall give notice of his decision to the Employer and the Contractor. Such decision shall state that it is made pursuant to this Clause. ..."로 규정하면서 감리자에 의한 1차적 분쟁해결 결정을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학봉, 건설공사 Claim, 탐구문학사, 2003, p. 115.

객관적인 분쟁심판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분쟁해결을 구하도록 기본 체계를 바꾸게 되었다.

당사자들에 의한 클레임이 제기는 타방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예를 들어 시공자(contractor)가 시공기간의 연장이나 추가대금의 청구 등에 관한 클레임상황이 알았을 때로부터 28일 이내에 타방당사자인 발주자나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⁵⁵⁾ 그리고 클레임을 제기하는 사건이나 상황을 알았을 때로부터 42일 이내에 클레임에 대한 근거 및 청구내용 등을 담은 상세한 클레임 내용을 발주자나 감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발주자나 감리자는 클레임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42일 이내에 청구에 대한 수락이나 거절의 회신을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이 클레임에 대한 첫 기간이다.⁵⁶⁾

발주자의 경우에도 하자통지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대금 감액, 상계 요구 등의 클레임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금액의 보상이나 기간연장 등에 관한 계약적 권리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클레임 제기 사실을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⁵⁷⁾ 클레임에 대한 절차와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당사자의 클레임에 대한 권리가 박탈된다.⁵⁸⁾

클레임의 제기와 회신을 통하여 클레임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 문제의 상황은 분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때 분쟁은 곧바로 소송이나 중재에 의한 해결을 구하지 않고 FIDIC의 규정에 의해 DAB에 의한 분쟁해결을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⁵⁹⁾ DAB에 의해 분쟁에 대한 결정을 구하는 경우 DAB는 제기된 날로부터 84일 이내에 해당 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⁶⁰⁾

55) FIDIC 표준계약조건 제20조 1항.

56) 김성철, 정병화, “FIDIC에 의한 건설계약 분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건축시공, 제10권 제4호, 한국건축시공학회, 2010, p. 24.

57) FIDIC 표준계약조건 제2조 5항.

58) FIDIC 구표준계약조건에서는 계약조건에서 발주자가 임의대로 시공자의 대금을 유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규정된 절차와 기한에 따라 클레임을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나 엔지니어가 시공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유를 제시하며 자의적으로 대금지급을 유보하거나 보증기간연장 등을 행하여 시공자를 곤란하게 하던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이종수, “New FIDIC 제정의 이해와 시사점”, 건설산업동향, 건설산업연구원, 2003. 10, pp. 9-10.

59) FIDIC 표준계약조건 제20조 2항.

분쟁해결을 위한 DAB의 역할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프로젝트 관련 업무관리를 통하여 분쟁을 예방하여 업무에 있어서 최고의 효율을 창출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발생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분쟁해결에 대한 당사자의 기대에 대응하는 것이다. 즉, 분쟁의 예방과 신속한 분쟁의 해결이 DAB의 주요한 역할이다.

프로젝트가 개시되면서 1인 혹은 3인으로 구성되는⁶¹⁾ DAB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 정규적이며 지속적인 활동을 한다. DAB는 계약에서 규정된 짧은 시간 내에 계약의무의 이행과 효과적 역할수행을 위하여 당사자들에게 프로젝트 과정에 따른 정규적인 현장방문과 회의 및 자료의 제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⁶²⁾ DAB가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제한된 기간 내에 신청된 분쟁과 관련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DAB결정은 신청이 수령한 이후 84일 이내 혹은 DAB가 기간을 제시하고 당사자들에 의해 승인된 기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⁶³⁾ DAB의 결정문에는 이유가 기재되어야 하며 계약당사자들을 구속한다. 비록 일방당사자가 결정에 불만족 통지가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우호적 해결이나 중재판정으로 DAB의 결정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DAB의 결정은 당사자들에게 즉시 효력을 갖는다.⁶⁴⁾ 만약 DAB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후속하는 중재 등의 분쟁해결 방법을 따를 수 있으나, 이 경우 DAB결정을 수령하고 28일 이내에 그 결정에 대한 수용거절의 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통지가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의 제시권한이 상실되며 양당사자는 DAB 결정문이 최종적이며 구속된다.

60) Gwyn Owen, "The Working of the Dispute Adjudication Board under New FIDIC 1999 (New Red Book)", www.gwynowen.com. June 2003, pp. 43-45; FIDIC 표준계약조건 제20조 4항.

61) DAB 위원회의 구성은 1인 혹은 3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지정은 당사자들의 합의로써 구성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FIDIC 회장이나 그에 의해 지정된 자가 지정한다. FIDIC 표준계약조건 제20조 3항.

62) FIDIC 표준계약조건 제20조 4항. 현장 방문하는 목적은 작업진행과정을 확인하고 실제적으로나 잠재적인 문제와 클레임을 알기 위해서이며, 공식적인 청취나 회의를 가짐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위한 사전활동과 신속한 분쟁해결을 행할 수 있다.

63) 클레임의 제기부터 분쟁해결까지를 포함하면 총 168일 이내가 된다.

64) DAB 결정에 대한 불만족의 통지는 결정을 수령한 후 28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8일 이내에 불만족의 통지가 없다면 DAB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구속적이 된다. FIDIC 제20조 4항.

4. 세계 주요 분쟁해결위원회에 의한 분쟁해결의 적용

1) UK(영국)의 DAB

분쟁해결위원회는 국제적으로 건설프로젝트의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영국은 1970년대 시작되었으며 건설 프로젝트에 심판제도(adjudication)로 발전하였다.

영국의 심판제도는 구속적 결정을 제시하는 것이며 이후에 재심이나 항소로서 중재나 소송을 통하여 결정되기 이전까지는 구속적 효력을 유지하는 특징을 갖는다. 1996년 주택인가와 건설 및 재건축법(Housing Grants, Construction and Regeneration Act 1996)에 제정적 분쟁심판제도의 이용규정을 포함함으로써 건설 분야의 분쟁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효과를 구현하였다.⁶⁵⁾

하지만 영국에서 분쟁해결위원회의 이용이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제정법상의 심판을 대체하는 대안으로서 분쟁해결위원회로 보지 않고 있으며, 분쟁해결위원회를 이용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분쟁해결위원회의 절차와 제정법상의 심판사이에 그 경계가 불명확한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 계약당사자들에게 분쟁해결위원회의 제도와 절차가 익숙하지 않는 것도 분쟁해결위원회의 이용이 저조한 이유가 되고 있다.⁶⁶⁾

2) 미국의 DRB

미국은 1960년대부터 분쟁해결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의 댐이나 건설공사 등 민간 건설산업분야의 분쟁해결에 성공적으로 이용되었다.⁶⁷⁾ 건설 프로젝트에서 분쟁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분쟁해결을 위한 비용과 상거래관계 훼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구하

65) Harvey J. Kirsh, "Dispute Review Boards' and 'Adjudication': Two Cutting Edge ADR Processes in International Construction", American Bar Association Annual Meeting at New York, 2008, p. 18. extracted from www.cccl.org

66) Christopher Miers, "Benefit from a dispute resolution board on your project", Probyn Miers, www.probyn-miers.com 2011. 2.

67) Daniel D. McMillan and Robert A. Rubin, "Dispute Review Boards: Key issues, recent case law, and standard agreements", American Bar Association, Number 2, Volume 25, spring 2005.

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안적 분쟁해결로서 전통적으로 중재나 조정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며,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다. 실무적으로 건설 프로젝트에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의 조정과 중재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심의위원회(DRB)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분쟁해결을 위해 발전되어 왔으며 실질적인 분쟁해결방법을 이용함으로써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⁶⁸⁾

3) World bank의 FIDIC

세계은행은 국제 프로젝트 특히 건설프로젝트에 분쟁해결위원회의 이용을 권고하여 분쟁해결위원회 이용이 증대시키는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왜냐하면 세계은행을 통한 조달의 건설프로젝트에 FIDIC 국제건설계약(Red Book)을 이용하는 경우 분쟁해결위원회의 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아프리카나 중남미 저개발국가, 개발도상국 등 세계은행의 자금(funding)으로 건설되는 제3세계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하거나 수주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계은행의 조달계약에 참조되는 FIDIC 표준계약조건의 DAB에 의한 분쟁해결을 따라야 한다.⁶⁹⁾

4) 우리나라의 분쟁조정위원회

우리나라는 법률에 의해 행정기관의 사전 조정단계로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⁷⁰⁾ 건설분쟁은 법원에서 소송이나 중재로 행하게 되

68) Massachusetts Highway Dep't v. Perini Corp., Nos. 00-4096 BLS, 01-0906 BLS, 00-5700 BLS, 2001 Mass. super. LEXIS 412(Super. Ct. of Mass., at Suffolk, aug. 13, 2001); Los Angeles County Metro. Transp. Auth. (MTA) v. Shea-Kiewit-Kenny (SKK), 59 Cal. App. 4th 676 (1997); BAE Automated Sys., Inc. v. Morse Diesel Int'l Inc., No. 01 civ. 0217 (SAS), 2001 U.S. Dist. LEXIS 6682 (S.D.N.Y. May 21, 2001).

69) 이종수, "New FIDIC 제정의 이해와 시사점", 건설산업동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3. 10, p. 3.

70)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

는 경우 그 해결방식으로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분쟁해결기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한 분쟁해결을 구하는 건설분쟁의 특성상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중재나 소송이전에 조정단계를 거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사전에 조정단계를 거쳐 분쟁을 심의, 조정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해 조정안이 제시되면, 조정안을 수령한 당사자들은 조정안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거부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제시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즉,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경우 조정안에 당사자들의 서명으로 조정안이 계약적 구속력을 갖는다.

조정안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후속적으로 중재나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이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분쟁해결위원회(dispute board) 제도는 사적분쟁해결위원회로서 당사자들의 계약적 합의에 의해 설치되고 운영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분쟁조정위원회와 차이가 있다.⁷¹⁾ 또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우리나라의 분쟁조정위원회와는 달리 분쟁해결위원회는 계약의 개시시점에 당사자들에 의해 구성되어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되면서 정규적 지속적으로 현장방문과 회의가 행해지면서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분쟁사안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면에서 구별된다.

IV. 분쟁해결위원회의 한계와 대응방안

중장기 국제 플랜트나 건설에서 프로젝트 시작부터 분쟁해결위원회를 구성하

69조 참조)

71) 2012년 9월 설립인가를 받고 최근에 개소하는 공익사단법인인 '서울국제중재센터(Seoul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center; Seoul IDRC)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과 구별하여 분쟁해결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분쟁해결위원회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여 분쟁해결을 도모할 때 관련 제도가 갖는 유용한 실무적 효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분쟁해결위원회에 의한 분쟁해결은 비제정법적 제도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분쟁해결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제정법적 분쟁해결제도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계약적 분쟁해결제도이다. 중재나 소송의 경우에는 국내법과 국제협약이나 조약⁷²⁾과는 달리 분쟁해결위원회는 당사자들의 계약적 법리에 의할 뿐이다.

분쟁해결위원회는 중재판정부가 아니며, 계약조건에 따라 분쟁해결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를 규율하는 분쟁해결위원회의 결정이 구속적(binding)일지라도 그 결정이 국제 및 국내의 제정법적 효력이 아닌 계약적 효력만을 가질 뿐이다.

현재, 어느 나라도 분쟁해결위원회를 규율하는 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분쟁해결위원회를 적용하는 법은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소재지 국가법에 밀접하게 연계된 국가의 계약법에 의한다. 국제상업회의소나 AAA, FIDIC 등 분쟁해결위원회 규정과 제도를 소개하고 있으나, 규칙으로서 상세한 절차규정이거나 보완규정 및 제재규정 등은 누락되어 제도적으로 분쟁해결위원회를 규율하는 표준화된 규칙으로는 미흡하다. 결국 분쟁해결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신뢰와 확신 및 협력을 기초로 하는 분쟁해결제도이다. 신뢰와 협력이 상거래에서 가장 요구되는 요소이지만 또한 추상적이며 관념적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둘째, 분쟁해결위원회가 이용되는 경우 야기되는 문제 중에는 후속적으로 최종적인 분쟁해결절차에서 결정이나 권고가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와 권고의 결정이 인정될 수 있는가이다. 관련 사항은 계약적 성격에 따라야 할 것이다. 즉, 당사자들이 계약을 통해 또는 후속적으로 최종적이며 구속적일 것을 합의한 범위 내에서 분쟁해결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구속적이다. 그러한 결정이 최종적이며 구속적이 되는 경우 어느 당사자가 다른 절차를 구하면서 관련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 금반언 원칙의 위반에 놓이게 된다.

실무적으로 분쟁해결위원회의 결정이나 권고의 후발적 분쟁해결로서 중재약정에 의한 중재절차가 항소적 기능을 하며, 분쟁해결위원회의 결정이나 권고와 양립하는 결과를 수반하게 된다. 분쟁해결위원회 결정이 후속하는 사법적 중재

72) 각국간의 소송판결의 상호 승인과 집행에 위한 조약 혹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국제협약(뉴욕협약 1958) 등을 통한 준거법적 규율체계에 의한다.

나 소송에서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결국 분쟁해결위원회의 결정이나 권고는 중재나 소송의 사법적 절차를 통하여 현실화되며 구속력과 집행가능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분쟁해결위원회의 권고나 결정에 주어지는 가치는 후속하는 중재나 소송에 따라 좌우되는 한계를 갖는다.

셋째, 법률적 기능의 축소와 사법적 정의보다는 실무적이며 효율적인 해결을 구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중장기 국제거래에서는 모든 분쟁을 회피할 수는 없지만 분쟁해결위원회 제도를 통하여 분쟁발생을 억제하고 예방하며, 발생한 분쟁에 대한 신속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분쟁이 사법적 소송이나 중재로 심화되지 않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분쟁해결위원회 제도는 현장 및 실무적 이해와 경험 및 지식에 따른 전문가의 판단을 중심으로 분쟁해결을 접근하고 있다. 법률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다른 분쟁해결방법과는 달리 분쟁해결위원회는 법률가의 참여와 역할이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분쟁해결위원회에 따른 정규적 회의에서 법률적 조력자가 참여하지 않으며, 분쟁해결절차상 청문의 경우는 법률적 조언자의 참여나 컨설팅이 불필요하다. 분쟁해결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상호 대립적인 논쟁을 요구하기 보다는 당사자에게 필요한 답변을 요구하는 형식이다.

일반적으로 고액의 거래에서 서면의 제출문을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제시하고자 하겠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때 고려하는 사항이지 분쟁해결위원회 제도에서는 과도한 대응이라고 할 것이다. 분쟁해결위원회의 결과가 거부되는 경우에 일방 당사자 혹은 양당사자들은 전략적으로 소송이나 중재로 진행하게 되고 법률가의 조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므로 후속하는 법률적 조력이 요구되는 사법적 소송이나 중재와 달리 실무적이며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구하는 분쟁해결과의 차이를 간과할 수는 없다.

분쟁해결위원회 제도가 갖는 다양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제 조달, 입찰이나 건설 프로젝트에서 분쟁해결위원회 제도에 의한 분쟁해결을 표준조건으로 포함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에 대한 이해와 대응은 필수적이다. 분쟁해결위원회에 의한 분쟁해결제도가 사법적 소송이나 중재와 차이가 있고, 전통적인 조정제도와도 구별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가운데 중장기 국제거래를 준비하는 당사자들에게는 국제적으로 중장기 계약의 특성에 부합하는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중재나 소송을 대체하는 분쟁해결방법임은 자명하다.

분쟁해결위원회 제도의 주요한 목적은 기본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 소송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있다. 중장기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주자와 계약자의 신뢰관계는 중재나 소송을 진행하면서 약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제도적 한계부터 법률적 고려를 포함하여 거래의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 하에 분쟁해결위원회 제도를 이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즉, 본 제도가 갖는 분쟁해결제도로서의 이점과 한계를 명확히 살펴보고 이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분쟁해결위원회를 통해서 분쟁에 관한 최선의 해결은 국제 플랜트나 건설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성에 장애가 되기 전에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로써 분쟁해결위원회 제도가 함축하고 있는 논란을 해결하는 것이다.

V. 결 론

해외 플랜트 및 건설시장의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나라의 건설업계로서는 중장기 국제거래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분쟁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안을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FIDIC의 국제표준계약조건을 사용하고 있는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남미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국제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사법적 소송이나 중재제도가 분쟁의 치료가 목적이라면, 분쟁해결위원회 제도는 분쟁의 치료와 함께 분쟁의 예방을 추가하고 있다. 여타의 분쟁해결제도가 분쟁이 발생된 이후 구성되고 해결을 구하는 절차를 수행하는데 반하여, 분쟁해결위원회는 계약에 따른 사업이 개시될 때 구성되어 운영되고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며 회의가 진행하며 작업 현장과 정보가 관리된다. 이 과정 중에 분쟁해결위원회는 분쟁이 제기되면 작업진행상황과 유지된 관리된 정보 하에 신속하게 서면과 청문의 과정을 통하여 전문적이며 실무적인 판단으로 비구속적 권고(recommendation) 혹은 구속적 결정(decision)을 제시함으로써 당사자가 수용하는 경우 사법적 소송이나 중재를 피할 수 있는 제도이다.

분쟁해결위원회 제도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은 계약에 따른 창출물이다. 그러

므로 계약을 통하여 그 구성과 특성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일반적인 계약의 당사자들이 정형화된 표준계약조건과 형식을 통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현재 국제 플랜트나 건설 프로젝트에 활용되는 FIDIC의 (DAB)와 ICC의 DB 규칙에 의한 분쟁해결위원회 제도와 규칙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은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ICC 분쟁해결위원회 규칙은 다양한 특성을 갖는 분쟁해결위원회 유형을 포괄하여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하고 잘 구성된 절차와 규정내용을 가지고 있기에 다소 복잡하고 지나치게 과도한 비용규정 등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⁷³⁾ ICC 센터에 의한 부수적으로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추가적인 특성은 분쟁해결위원회 제도가 향후에 ICC를 통하여 분쟁해결분야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컨대 다양한 국제상거래 분쟁해결제도는 나름대로의 이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국제상거래 당사자들은 다양하게 이용 가능한 분쟁해결방법을 고려하여 분쟁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실무적으로 분쟁해결위원회 제도의 특성에 따른 분쟁해결을 구하는 수요는 이행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플랜트나 건설프로젝트와 같은 중장기 국제계약의 당사자들이다. 중장기 국제거래에서 분쟁해결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상호 신뢰와 확신을 통하여 성공적인 제도로서 의미를 가질 것이다. 국제 프로젝트 시장의 흐름과 분쟁해결위원회 제도라는 분쟁해결방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건설 프로젝트 계약당사자들의 대응과 활용이 요구된다.

73) Carroll s Dorgan, "The ICC's New Dispute Board Rules",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Law Review, Vol. 22, Part 2, 2005, p. 148.

참 고 문 헌

- 김성철, 정병화, “FIDIC에 의한 건설계약 분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건축시공」, 제10권 제4호, 한국건축시공학회, 2010.
- 이동욱, 김창학, 이배호, “FIDIC 계약조건과 국내계약조건의 클레임 관련조항 비교 연구”, 기술과학연구소 논문집, 제28권, 중앙대학교 기술과학연구소, 1998.
- 이종수, “New FIDIC 제정의 이해와 시사점”, 건설산업동향, 건설산업연구원, 2003. 10.
- 최명국, “FIDIC 표준계약조건상의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2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5. 8.
- 현학봉, 건설공사 Claim, 탐구문학사, 2003,
- Benjamin JW Teo, “Proactive dispute Prevention: The value of dispute review boards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27 BCL 233, Thomson Reuters, 2011. Extract from www.daps.org.au
- Carroll s Dorgan, "The ICC's New Dispute Board Rules",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Law Review, Vol. 22. Part 2, 2005.
- Christopher Miers, "Benefit from a dispute resolution board on your project", Probyn Miers, www.probyn-miers.com 2011. 2.
- Daniel D. McMillan and Robert A. Rubin, "Dispute Review Boards: Key issues, recent case law, and standard agreements", American Bar Association, Number 2, Volume 25, spring 2005.
- Donald Charrett, "Dispute Boards and Construction Contracts", BulidLaw, Building Disputes Tribunal, 7 Sept 2010.
- Gwyn Owen, "The Working of the Dispute Adjudication Board under New FIDIC 1999 (New Red Book)", www.gwynowen.com. June 2003.
- Harvey J. Kirsh, "'Dispute Review Boards' and 'Adjudication': Two Cutting Edge ADR Processes in International Construction", American bar Association Annual Meeting at New York, 2008. Extracted from

www.cccl.org

- Nael G. Bunni, "Dispute Board with Particular Emphasis on FIDIC's DAB Procedure",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and Dispute Resolution Conference, ICC and FIDIC in Cairo, April 2005.
- Paula Gerber and Brennan J Ong, "21 today! Dispute review boards in Australia: Past, present and future", 22 ADRJ 180, Thomson Reuters, 2011.
- Peter H.J. Chapman, "Dispute Boards on Major Infrastructure Projects", www.daps.org.au, www.PeterHJChapman.com, 2011.
- Susanne Kratzsch, "ICC dispute resolution rules: ICC dispute boards and ICC pre arbitral referees", Construction Law Journal, 2010.
- Susanne Kratzsch, "ICC Dispute Resolution Rules: ICC Dispute Boards and ICC Pre-Arbitral Referees", Construction Law Journal, No. 2, 2010.
- Volker Mahnken, "ICC dispute board rules and the differences towards the FIDIC DAB provision", SIEMENS, LS Legal Service, 24 Jan. 2008.

ABSTRACT

A Study on the Dispute Boards in International Medium and Long-term Transaction - Focus on the Construction Contract-

Yu, Byoung Yook

International transactions of plant and construction project need to time to time for completing the contract. During the performing the contract there may arise many claims and disputes it should be settled rapidly for processing schedule of works. However, arbitration and litigation for settlement of dispute are inappropriate in time and expense under the specifications of plant and construction project.

Dispute boards are one of the successful resolution method of dispute prior to litigation or arbitration. If the dispute board was failed, of course, it may be allowed to continue into litigation or arbitration.

As the creative methods of parties agreement, dispute boards may be expected to avoid claims and dispute in long and medium international con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specification and limitations of dispute boards that may clear disputes under long and medium contract of construction and procurement. It needs to be understand to determine whether is the useful methods for resolving dispute in the international project.

This paper considers the specific natures of dispute board and its rules, procedures and problems including ICC and FIDIC for the contract of long and medium transaction.

| |
|--|
| Key Words : Long and Medium International Contract, Dispute Board, Plant and Construction, DRB, DAB, CDB, Non-binding Recommendation, Binding Decision |
|--|